

# 보상위원회규정

2018. 05. 02.

# 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보상위원회규정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보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2장 구 성

**제3조 (구성)**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
**제4조 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 의

**제5조 (소집권자)** ① 위원회는 年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결의방법)**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 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7조 (결의사항)** 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표이사, 사내 등기이사, 본부장 이상 경영진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, 보상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2. 보상체계의 설계·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
3. 보상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등의 상시점검
4. 보상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
5. 기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
**제8조 (보고의무)**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의사록)**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위원의 의무)** ① 위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회사의 기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.

② 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.

③ 보상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보상제도의 설계,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, 심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**제11조 (전문가의 조력)** 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**제12조 (규정의 개폐)**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